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건설관리과-3131
등록일자	2015.2.5.
결재일자	2015.2.6.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건설행정팀장	건설관리과장	안전교통국장		
이현우	강우택	송진영	전결 02/06 조홍기		
협조자					

- 도시미관 향상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 2015 간선·이면도로 사설안내표지판 정비계획



■ 추진기간 : 2015. 1. 1 ~ 2015. 12. 31

■ 추진방향

- 관내 국가 등 공공기관 사설안내표지판 버전업 협조 요청 (한국어, 영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사설안내표지판 자진정비 유도 후 미정비시 변상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강제집행 실시

■ 추진방법 : 상·하반기 각각 집행

■ 중점추진사항

- ▷ 강남대로, 영동대로, 도산대로, 봉은사로 등 주요간선도로 집중 정비
- ▷ 불법사설안내표지판 일제조사 실시
- ▷ 불법사설안내표지판 자진정비명령 미이행시 변상금,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히 행정조치 시행(도로법 제72조 및 제100조)

2015. 2. .

강 남 구
(건 설 관 리 과)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p>관련 규정 및 근거</p>	<p>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법 제61조(도로점용의 허가), 제72조(변상금의 징수),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및 제100조(이행강제금) 																											
<p>추진 경위</p>	<p>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경위 :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 사설안내표지판 개선사업 																											
<p>예산 사항</p>	<p>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p>수혜자 및 범위</p>	<p>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일반주민 																											
<p>분야 별 검토사항 [계속 :] [신규 :]</p>	<p>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p> <table border="0"> <tr> <td>① 관련부서 협조</td> <td>-----</td> <td>(0)</td> </tr> <tr> <td>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td> <td>-----</td> <td>()</td> </tr> <tr> <td>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td> <td>-----</td> <td>()</td> </tr> <tr> <td>④ 미래행정 수요예측</td> <td>-----</td> <td>()</td> </tr> <tr> <td>⑤ 시장조사</td> <td>-----</td> <td>()</td> </tr> <tr> <td>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td> <td>-----</td> <td>()</td> </tr> <tr> <td>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td> <td>-----</td> <td>()</td> </tr> <tr> <td>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td> <td>-----</td> <td>()</td> </tr> <tr> <td>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td> <td>-----</td> <td>()</td> </tr> </table> <p>•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p>	① 관련부서 협조	-----	(0)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⑤ 시장조사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① 관련부서 협조	-----	(0)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⑤ 시장조사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p>타 기관 사 례</p>	<p>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구 실태파악 결과 - 25구 동일사항 추진 중 																											
<p>전문가 자 문</p>	<p>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없음 																											

- 도시미관 향상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
2015 간선·이면도로 사설안내표지판 정비계획

서울시 사설안내표지판 표준디자인 매뉴얼 ver.2(2012.10)에 적합하도록 사설안내표지판을 교체(버전업) 등의 방식으로 정비하고, 도로에 난립하여 설치된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사설 안내표지판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I 법적 근거

- 도로법 제61조, 제72조, 제74조 및 제100조
-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예규 제78호, 2014.7.16.)
- 서울특별시 사설안내표지판 표준디자인 매뉴얼 ver.2

표준디자인 매뉴얼 ver.1 (한글 + 영어)	표준디자인 매뉴얼 ver.2 (한글 +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p>가. 기본타입(한글, 영어)</p> 	<p>나. 제2외국어 표기 타입(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p> 

II 추진 경위

- '08. 9. '서울시 사설안내표지판 표준디자인 매뉴얼' 확정 - 도시경관담당관
- '12. 10. 사설안내표지판 표준디자인 매뉴얼 개정(ver.2) - 공공디자인과
- '12. 12. 다국어안내표지판 종합정비계획 - 관광사업과
- '12. 12. '13년 사설안내표지 정비계획 시달 - 보도환경개선과
- '14. 2. '14년 사설안내표지 정비계획 시달 - 보도환경개선과

Ⅲ

추진 방향

- 우리구 관내 타(他)공공기관 사설안내표지판 버전업 협조 요청
(한국어, 영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사설안내표지판 자진정비 유도 후
미정비시 변상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강제집행 실시

Ⅳ

정비 계획

- 정비기간 : 2015. 1. 1 ~ 2015. 12. 31
- 정비지역 : 관내 주요 간선 및 이면도로
- 정비방법
 - 허가 사설안내표지판

설치기관	정비방법
우리구	- ver.2로 재설치
국가 등 공공기관	- ver.2로 재설치 유도 · 대상기관에 재설치 안내문 발송 및 유도
민간(기관)	- 설치자부담 재설치할 경우 민원발생 예상됨에 따라 기존 안내표지 허용 - 노후, 훼손 등으로 부득이 재설치할 경우 ver.2로 설치 유도

- 무허가(불법) 사설안내표지판

절차	정비방법
1단계	- ver.2로 설치 및 점용허가 신청 유도 - 허가대상 기관이 아닌 경우 철거명령
2단계	- 철거명령 미이행시 변상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3단계	- 강제 정비 집행

V

기대 효과

- 다국어 표기를 추가하여 시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방문객의 편의 및 접근성 제고
- 무절제한 정보 난립 방지로 가독성 및 시인성 확보, 표준 디자인 적용으로 쾌적하고 정돈된 경관 수준 제고

VI

중점추진사항

- 강남대로, 영동대로, 도산대로, 봉은사로 등 주요간선도로 집중 정비
- 불법사설안내표지판 일제조사 실시
- 불법사설안내표지판 자진정비명령 미이행시 변상금,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 조치 시행(도로법 제72조 및 제100조). 끝.